

## 화순군이장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9. 화순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6. 9.
- 다. 상정일자 : '96. 9. 18 (제4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자 : 내무과장 이병일

- 나. 제안이유

- 화순읍의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일부 행정리의 분구와 청풍면 백운리의 인구감소 등 행정리 통합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- 다. 주요내용

- 이장 정원의 조정(안 제2조)

- . 화순읍 교리 1명 → 2명 (교리 → 교리 1, 2구)
    - . 화순읍 만연리 2명 → 3명 (만연 2구 → 만연 2, 3구)
    - . 화순읍 일심리 3명 → 4명 (일심 3구 → 일심 3, 4구)
    - . 화순읍 광덕리 3명 → 4명 (광덕 1구 → 광덕 1, 4구)
    - . 청풍면 백운리 2명 → 1명 (백운 1, 2구 → 백운리)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희)

- 동 조례개정안은 화순읍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증가 및 청풍면 백운리의 인구감소로 인해 불합리한 행정리 조정에 따른 이장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### 4. 질의답변 요지

" 생략 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부 :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9.

제출자 : 화순군수

### 1. 제안이유

화순읍의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증가로  
인한 일부 행정리의 분구와 청풍면의 인구 감소로 행정리 통합

### 2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
- 화순군반설치조례

### 3. 주요골자

(화순읍)

- 화순읍 교리 → 교리 1, 2구 분구  
 화순읍 만연리 → 만연 3구 신설  
 화순읍 일심리 → 일심 4구 신설  
 화순읍 광덕 1구 → 광덕 1, 4구 분구

(청풍면)

- 청풍면 백운 1, 2구 → 백운리로 통합

##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화순읍 교리, 만연리, 일심리, 광덕리와 청풍면 백운리 "이장정원"을

다음과 같이 한다.

읍 면 명	리 명	정 원	비 고
화 순 읍	교 리 만 연 리 일 심 리 광 덕 리	2 3 4 4	
청 풍 면	백 운 리	1	
합 계	347	350	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			
읍면별	이 명	정원	비 고	읍면별	이 명	정원	비 고
화순읍	교리	1 —		화순읍	교리	2 —	
"	만연리	2 —		"	만연리	3 —	
"	일심리	3 —		"	일심리	4 —	
"	광덕리	3 —		"	광덕리	4 —	
청풍면	백운리	2 —		청풍면	백운리	1 —	
합 계		347 —		합 계		350 —	